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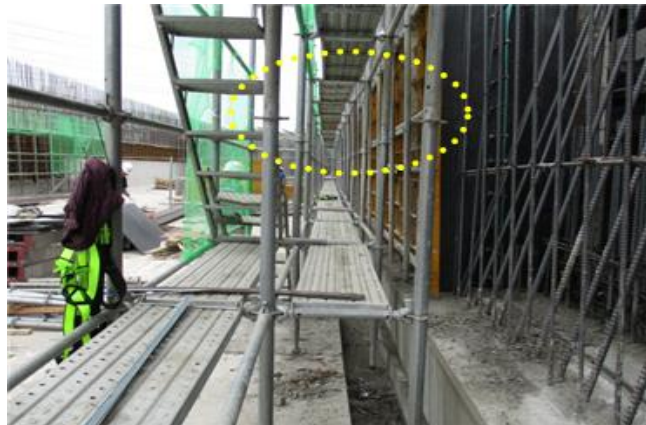
[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1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9.10.02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, 이상현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초안산 지하차도 벽체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작업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비계는 측면 안전난간이 일부 미설치되어 있고,
- 작업발판 단부 또한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작업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을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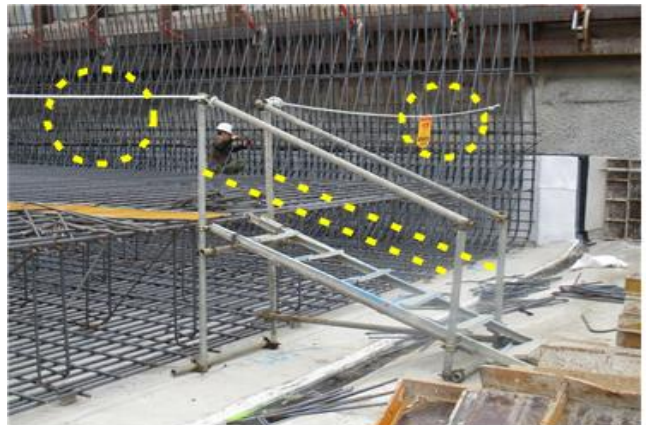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기초철근 작업구간 가설계단은 중간난간을 설치하기 바람,
- 단부에 설치한 로프 대신 규정에 맞는 안전난간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, 현장여건상 어려운 경우 2단으로 처짐없이 견고하게 설치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1공구와 2공구 접속구간에 있는 기계기구는 점검필증이 7월로 부착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반입전, 매월 정기적으로 기계기구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하여 관리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8(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가설기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항공마대는 하부가 파손되어 있어 양중시 자재 낙하 우려가 있으니 항공마대 교체 또는 마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자재는 자재운반구를 활용하여 운반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4(항공마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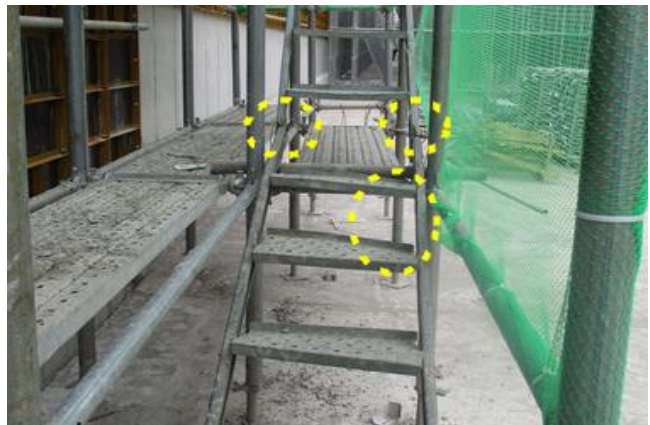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초안산 지하차도 구간 콘크리트 바닥에 돌출되어 있는 철근은 자재 또는 기계기구 운반 근로자가 전도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근로자가 돌출부임을 인지하기 쉬운 안전시설을 설치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가설비계 안전(토목부)

- 가설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은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조립하고 답단이 심하게 변형된 부분은 조치하기 바람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사면 안전(토목부)

- 초안산 구간 굴착사면 중 보호덮개 설치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-공동015(굴착단부 및 흩막이가시설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초안산 구간 비치된 소화기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착 관리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물저장소는 관리책임자,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나 위험물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니 관리책임자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게 비치 바람.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동-024(위험물 보관소)

